

## 한국마케팅학회 차기회장 선거관리 규정

###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마케팅학회 정관 제18조와 및 사단법인 한국마케팅학회 운영내규 제13조에 의한 차기회장선출을 위한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공천위원회)

1. 본회는 공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천위원회에서 차기회장 후보를 2인 추천한다.
2. 공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차기회장 후보 가운데 1인이 사퇴하는 경우 1인의 후보만으로 선거를 실시하고, 2인 모두 사퇴하는 경우 공천위원회를 다시 열어 2인의 후보를 추천한다.
3. 공천위원회는 현 회장, 차기회장, 전년도 회장, 그리고 부회장단으로 구성한다.
4. 공천위원장은 현 회장이 수행하며 공천위원회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5. 공천위원회에서는 선거 21일전까지 후보를 추천하여야 한다.
6. 공천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7. 공천위원회 의결사항에 관하여 불참위원의 의결권은 다른 위원이나 위원회에 위임될 수 없다.
8. 차기회장 추천을 위한 투표는 1인 2표로 하며, 동일한 자에게 2표를 함께 행사할 수 없다.
9. 차기회장 추천을 위한 투표에서 공천위원회 참가자는 자기 자신을 추천할 수 있다.
10. 공천위원회의 추천은 다득표순으로 하며, 동수의 득표인 경우 연장자를 추천한다.
11.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공천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정한다.

### 제 3조(차기회장 후보자의 자격)

1. 차기회장 후보는 본 규정 제2조 1항에 의해 구성된 공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2. 사단법인 한국마케팅학회 운영 내규 제13조 3항에 의거 차기회장 후보는 평생회원 가입 5년 이상인 자로 하며, 학회의 상임이사 이상의 직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제 4조(선거관리위원회)

1.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의 선거를 위한 선거공고, 선거권자 명부확정, 후보자 자격심사, 투표, 개표, 당선자 결정 등의 선거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간사 1인을 둔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본회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4.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본회 회장이 위촉한다.
5.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 5조(선거참관인)

1.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차기회장후보자는 1인의 참관인을 추천할 수 있다.
2. 참관인은 투표 및 개표 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
3.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 및 개표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참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6조(선거인명부)

1.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실시 6주전까지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회원에게 공람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투표권이 제외된 회원에게는 일정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이의신청 처리 결과는 선거인 명부 확정일 이전까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선거인 명부는 투표일 2주전까지 확정되어야 한다.

#### 제 7조(선거인의 자격)

선거일을 기준으로 본회의 정회원 중 회계연도 기준 가입 2년차 이상인 평생회원만이 선거권을 가진다.

#### 제 8조(선거공고)

1. 선거관리위원회는 차기회장 임기시작 3개월 전까지 차기회장선거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선거공고에는 선거일정 및 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 9조(후보추천 및 후보등록서류)

1. 추천된 후보는 피추천 후 10일 이내에 사무국에 서류로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2. 후보등록 서류는 다음과 같다.
  - (1) 자기소견서 1부 (A4 용지1매 이내)
  - (2) 이력서 1부 (사진, 생년월일, 학력, 경력 및 학회이력 A4 용지1매 이내)
  - (3) 공천위원장 추천서 및 회의록 사본

#### 제 10조(당선자 결정)

1. 차기회장 당선자는 유효투표 중에서 최다득표자로 한다.
2. 최다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인일 경우, 1인의 후보에 대해 찬반투표를 실시하며, 유효투표 중에서 찬표가 반표보다 많으면 당선자로 결정한다.
4. 후보자가 1인일 경우, 3항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후보추천을 다시 받아 재선거를 실시한다.

#### 제 11조(투표지 및 선거관계자료 발송)

1.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모든 회원에게 선거관리위원장의 검인을 필한 투표지와 후보자 인적사항 및 투표요령에 관한 자료를 발송해야 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지 발송에 관한 자료를 확인한 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제 12조(투표지회수)

투표지가 회원에게 발송된 날로부터 21일까지 회수된 투표지를 유효투표로 한다.

#### 제 13조(개표)

회수된 투표지는 회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표한다.

#### 제 14조(개표결과 통보)

개표집계 결과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개표집계가 완료된 즉시 후보자 또는 후보자 대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 15조(선거에 대한 이의신청)

후보자가 선거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표집계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 16조(선거결과 보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로부터 접수된 선거 또는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를 심의한 후, 개표결과와 함께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7조(당선자 확정)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 및 개표결과에 관한 보고가 접수되면 이사회는 그 결과를 확정하여, 선거결과를 공고한다.

제 18조(재선거)

1. 다음 항목 중 하나에 속하는 경우 재선거를 실시한다.

- ① 선거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 ② 당선자의 사퇴 또는 차기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③ 선거관리규정 제 10조 4항의 경우

2. 재선거의 선거인은 선거관리규정 제6조와 제 7조를 다시 적용하지 않고, 직전 선거에서 확정된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자로 한다.

3. 재선거의 경우, 차기회장 선거관리 규정 제 2조의 4항(선거 15일 이전까지 추천), 제 9조 1항(10일 이내 후보 등록), 제 12조(투표지 회수기간 21일), 제 13조(회수 마감일로부터 7일 이내 개표)의 일정, 기간, 방식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에 의해 다시 정할 수 있다.

제 19조(선거운동)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운동을 위해 후보자 및 지지자의 선거운동방식, 이의신청, 처벌 등에 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1. 본 규정은 차기회장 선거 관련 정관 제2조, 제5조가 개정된 후로부터 효력을 발휘한다.(2003. 8.21)
- 2. 본 규정은 2015년 5월 9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2015년 차기 학회장 선거일정(안)**  
(2015년 11월 27일 ~ 2016년 1월 29일, 3개월)

|                         |   |                          |
|-------------------------|---|--------------------------|
|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 2015년 10월말 이전   |                          |
| ▫ 선거공고                  | 2015년 11월 24일(화)  | 차기회장 임기 3개월 전까지          |
| ▫ 선거인명부 공람              | 이의신청 2015년 11월 24일~12월 14일 (3주)<br>이의신청 처리 12월 15일~12월 21일 (1주) | 선거 <b>6주전</b> 에 공람       |
| ▫ 선거인명부 확정              | 2015년 12월 22일(화)  | 선거 <b>2주전</b> 까지 확정      |
| ▫ 후보자 추천                | 2015년 12월 15일 이전<br>[공천위원회 예정일 12월 11일(금)]                      | 선거 <b>21일전</b> 까지 후보추천   |
| ▫ 후보자 등록                | 2015년 12월 12일~12월 21일   | 피추천 후 <b>10일</b> 이내 서류제출 |
| ▫ 투표지 발송                | 2016년 1월 5일(화)  |                          |
| ▫ 투표기간                  | <b>2016년 1월 5일~1월 25일 (25일 소인유효)</b>                            | <b>발송된 날로부터 21일까지</b>    |
| ▫ 개표 및 결과 통보            | 2016년 1월 27일(수)   | 회수된 날로부터 7일 이내           |
| ▫ 이의신청                  | 2016년 1월 27일~1월 29일   | 통보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
| ▫ 이사회 보고<br>당선자 확정 및 발표 | 2016년 3월 12일(토)   | 이사회 및 총회[춘계학술대회]         |